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Legal Issues by Practice of Online Arbitration

우광명(Kwang-myung Woo)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강사

목 차

- | | |
|-----------------------|---------------------------------|
| I. 서론 | IV.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와
해결 |
| II. ADR의 의의와 중재 | V. 결론 |
| III. 온라인 ADR의 의의와 유용성 | 참고문헌 |

Abstract

The rapid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increases the potential for conflicts over contracts which have been entered into online(e.g. about price, late delivery, defects, specifications ...). Using arbitr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alternative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especially in case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echnology disputes since speed and secrecy are essential. The use of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mechanisms to resolve such e-commerce conflicts is crucial for building business, consumer confidence and permitting access to justice in an online business environment. However, the use of the Internet and the World Wide Web in dispute resolution has an impact on the types of communication implied in the relevant processes(negot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This paper deals with legal issues with respect to the practice of online arbitration. The paper begins with a brief introduction to the theories behind arbitration. These sections will be followed by a discussion on the specifics of online arbitration and the problems the process faces online arbitration by the legal community.

Key Words: ADR,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E-commerce, Online Arbitration

I. 서론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대는 해외에 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거래기회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간(B to C) 전자거래분야만을 고려하더라도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쉬워 소비자들은 국경 없는(borderless) 세계시장에서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기업들은 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증진시킬 좋은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전자거래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off-line) 거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on-line) 거래에서도 사기, 오해 그리고 불공정한 상행위(unfair commercial conduct)등에 관한 기회도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¹⁾

전자거래의 분쟁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할 때는 그 문제들은 보다 복잡하게 된다. 특히 전자거래는 통상의 거래와 비교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량의 반복적 거래, 비대면 거래, 의사표시 형성과정의 즉시성, 의사표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지는 기술적 특성,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 계약성 등의 특성²⁾을 가지기 때문에 분쟁발생의 우려가 더욱 높다. 그리고 오늘날 전자거래의 흐름이 기업과 소비자간(B to C)의 거래에서 점차 기업간거래(B to B)로 확대됨에 따라 분쟁양상도 매우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거대화되고 있다.

전자거래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분쟁처리를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다지 문제는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에는 신중함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배려 때문인지, 혹은 법조계가 전통적으로 가지는 보수적인 경향 때문인지 그와 같은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의 분쟁해결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³⁾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스페이스 자체가 가지는 독특한 문화, 기술적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이나 재판제도에 유연성이 필요하고, 변화속도가 빠른 정보통신기술 부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의 재판절차보다는 재판외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칭함)은 그 필요를 만족시키는 한가지 방법이다. ADR은 사소한 분쟁이나 이웃간의 분쟁에서부터 국제무역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ADR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분쟁당사자들에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도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ADR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999년 OECD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ADR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⁴⁾ 또한 미국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은 2000년 6월에 국경 없는 온라인 시장에서

1) Marc Wilkens, Arnold Vahrenwald, "Out-of-court dispute settlement systems for e-commerce," 20th April 2000, Philip Morris Joint Research Center, p.2.

2) 노태약, "전자거래·전자서명의 계약법적 검토", 경제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2000.

3) 早川吉尚, "サイバースペースの擴大と國際民事訴訟リスクの増大", 「法學セミナー」, 日本評論社 No.511, 1997, p.130.

의 소비자 거래에 대한 ADR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회를 조직하였고,⁵⁾ 미국의 전통적인 ADR조직들도 온라인에 진출하고 있다.⁶⁾ 그리고 사이버 ADR의 실례로서 Online Ombuds Office, Virtual Magistrate, Cybertribunal, ICANN통일분쟁해결서비스 등 그 외 다수의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다양한 형태의 ADR 중에서 사적 재판으로 불리는 중재를 중심으로 ADR을 개관하고, 전자거래 분쟁에 있어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중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고에서는 무역상무 분야에 초점을 두고 법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연구방법으로써는 온라인 중재와 관련된 각종 문헌 및 각국의 법률 그리고 온라인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하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II. ADR의 의의와 중재

1. ADR의 의의

오늘날 대부분의 분쟁이 사법적 쟁송절차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때로는 현대적인 복잡한 분쟁에 있어서 사법적 해결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은 부인할 수 없다. 사건수의 폭발적 증가 역시 당사자에 대하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도 업무 과중이라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⁷⁾

소송(litigation)에 의한 분쟁해결은 종종 시간적인 지연과 많은 비용을 들게 하는 절차로서, 사람들과 기업들은 오랫동안 소송에 대한 대안을 찾아오고 있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분쟁해결 방법들은 각국 또는 각 분쟁해결기관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송 이외의 모든 분쟁해결방법을 총칭하여 ADR이라 한다. ADR이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로서 Alternative라는 말이 「그것에 대신하는(수단, 방법)」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또는 명사)이기 때문에,⁸⁾ ADR을 직역하면 「그것에 대신하는 분쟁해결」이라고 할 수 있지

4) The Guideline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principal VI under B (sub iv) - Consumers should be provided meaningful access to fair and timel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without undue cost or burden. <http://www.oecd.org/dsti/sti/it/ec/index.htm>(under electronic commerce), 2003년 4월 30일 방문.

5) <http://www.ftc.gov/bcp/altdisresolution> 2002년 2월 1일 방문.

6) 사이버로-연구회·指宿 信 編, 「사이버스페이스法」, 日本評論社, 2000, p.273.

7) Joseph T. McLaughl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American Law Institute, 1993.

8) 이는 공공적인 의미에 대신하는 것으로 사적(private)임을 뜻하며, 그러한 전통적 수단의 강제적(compulsory)이라는 의미에 대체하여 자율적(voluntary)임을 의미하기도 한다.(Robert Coulson,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만, 미국의 법사적 문맥상 ‘그것’이 재판, 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재판외분쟁처리」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⁹⁾

ADR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이라기보다는 다른 수단, 가령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 소비자 불만처리 시스템(consumer complaints systems) 등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재판체제 이외의 분쟁해결 매커니즘의 폭넓은 다양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ADR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¹⁰⁾ 그러나 이는 형식적으로는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소송의 형태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판결의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¹¹⁾

따라서 ADR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전통적인 사법적 소송절차에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 지연의 폐해를 줄이며,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¹²⁾ 이들은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에 기초하여 다툼을 해결하기 때문에 분쟁처리의 합리성, 신속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나머지 소송사건에 진력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거래나 노동분쟁, 이혼판결, 자동차 그리고 의료오진 불법행위 청구 등에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2. 중재

1) 중재의 의의

중재란 ADR의 한 형태로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분쟁해결을 중재인이 내리는 판정에 맡기고 당사자 그 판정에 구속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재는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면 양 당사자는 무조건 그 판정에 따라야 하고 그 판정이 양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면에서 소송에 가까운 ADR이라고 하여 근자에는 중재는 협의의 ADR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¹³⁾ 그러나 분쟁의 실제적인 해결을 제3자의 판정에 의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공통하지만, 당사자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p.6.)

9)鈴木仁志, “アメリカ合衆國のADRと訴訟社會(1)”, 『NBL』, No.715, 2001.6, p.20; 우리 나라에서는 ADR을 ‘訴訟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이라고 일컫기도 하고(송상현,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X IV, 박영사, 1993), ‘裁判外的’, ‘訴訟外的’, ‘訴訟代替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王武錫, “電子去來集本法上の紛争調停制度”, 『인터넷법률』, 제8호, 2001의 각주 9 참조)

10) Christopher Kuner, “Legal Obstacles to ADR in European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Commerce & Law Report*, Vol.5, No.29, 2000.7, p.773.

11) 반홍식,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9.

12) Lieberman &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University of Cleveland Law Review*, Spring, 1986, pp.425-426.

13)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제도』, 2001, p.2.

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 판정을 하는 제3자를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점, 제3자의 판정이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는 점 등에 있어서 국가권력에 의거한 강행적인 분쟁해결제도인 소송과는 상이하다. 또한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해결인 점에서 조정과 같지만, 중재인의 판정에서 한 당사자가 불복한다고 해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조정이 제시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자가 자유인 조정과도 상이하다.

2) 중재의 기능

역사적으로도 중재는 상거래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특히 상사분쟁에서는 ① 거래회사의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로 되고, ② 비용과의 균형이나 분쟁해결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③ 분쟁내용에 비밀성이 많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중재가 ① 중재인을 당해 분쟁분야의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다는 점, ②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기대된다는 점, ③ 그 절차와 판정이 비공개 된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중재인이 작성한 판정은 최종적으로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고,¹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할 수 없다.¹⁵⁾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중재가 폭넓게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¹⁶⁾

국제상사분쟁을 소송으로 처리한다면 당사자의 어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 국가의 법원에 의한 판결에 따라야 하지만,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판정기관에 의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판절차는 각국의 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사용언어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절차,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중재는 절차규칙이나 사용언어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만이 불이익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은 국제재판관할, 국제소송경합, 준거법의 결정 등을 둘러싸고 복잡한 분쟁을 발생시키지만, 중재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분쟁을 회피할 수 있다. 국제상사분쟁은涉外적 요소를 가지는 특수성 외에, 사건의 내용도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안건이 많지만, 중재에 의하면 당해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과 비교하여 신속하며 타당한 판정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서는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라 칭함)에 의해서 세계적인 통일이 사실상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제도의 틀을 넘어서 승인 및 집행을 얻을 수 있다.¹⁷⁾

14) 중재법 제37조.

15) 중재법 제36조.

16)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재제도로서는 중재법에 의한 상사중재 외에도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노동중재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가 활용되고 있다.

17) 三木浩二, “仲裁の機能と國際的動向”, 『法学セミナー』, 日本評論社, No.560, 2001.8, p.35.

국제중재에 있어서는 보다 선진화되고 전문화된 중재법 및 중재규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중재는 국제간의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수단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Ⅲ. 온라인 ADR의 의의와 유용성

1. 온라인 ADR의 개념

최근 분쟁해결의 새로운 형태가 다가오고 있다. ADR이 사이버스페이스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도구가 바로 온라인 분쟁해결(ODR 또는 eADR이라고도 함)이다. ODR 방식에서의 당사자들은 법정이나 중재인을 만날 필요가 없이 단지 컴퓨터 앞에 앉아 전자적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합의된 온라인 합의나 온라인 중재기관이나 사이버법정(cybercourt)에 그들의 분쟁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ADR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경직된 기존 법원과는 다르게 그 분쟁해결절차에 인터넷 웹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분쟁을 처리한다. 분쟁당사자가 온라인으로 ADR 시스템에 접근함으로써 소비자나 기업으로 하여금 거리·시간 등의 물리적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을 보다 쉽고 빠르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그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ODR이란 말은 ADR 방법에 의한 온라인 분쟁해결의 또 다른 형식으로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ODR은 기존의 ADR의 보완으로서 전자거래분쟁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ODR은 ADR 방식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로 정의될 수 있다.

ODR은 1996년 세 개의 선도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세 개의 선도 프로젝트란 ① 버츄얼 매지스트레이트(The Virtual Magistrate, VMAG), ② 메릴랜드 대학 온라인 조정 프로젝트(The University of Maryland Online Mediation Project, UMOMP), 그리고 ③ 마사추세츠 대학 온라인 옴부즈 오피스(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nline Ombuds Office, OOO)이다. 그 이후 ODR 서비스 제공기관이 번성하여, 현재는 ODR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약 50여 개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ODR 절차는 인터넷 사용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분쟁해결의 독특한 형식이거나 ADR운동에 의해서 이미 발전된 분쟁해결 형식중 하나이다. 현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분쟁해결체계의 유형은 오프라인 ADR의 기본유형이라 할 수 있는 협상, 조정 그리고 중재 등과 같다. 그러나 환경, 기관의 구조 그리고 절차적인 규칙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ODR 시스템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고, 분쟁해결과정에서 물리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의 위험이 없다. 즉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개인적으로 그 사건에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익명성(anonymity)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ODR 시스템의 이용은 새로운 기술과 ADR 방식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교육적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광범위한 관련 분쟁에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온라인 화해(online settlement), 온라인 중재(online arbitration), 소비자불만의 온라인 해결(online resolution of consumer complaints) 그리고 온라인 조정(online mediation) 등의 ODR이 있다.¹⁸⁾ 여러 형태의 온라인 분쟁해결의 유형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중재와 관련된 법적인 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온라인 ADR의 유용성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 세계각국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상의 행위를 전부 사이버스페이스에 두는 것으로 하며, 국제 사이버법정과 같은 국제기관을 창설하여 재판절차도 증거수집도 전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불가능 할 것이다. 사이버법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각국의 분쟁처리 규칙을 통일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제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되고, 각국의 국내법과의 조정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서 ODR의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 분쟁에 대해서 ODR 시스템이 여러 가지 유용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우선 ODR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통적인 ADR 보다 더 적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ODR 사이트들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소송과 ADR에서 발생하는 일정문제들을 해결해 준다.¹⁹⁾ 따라서 당사자들은 집이나 직장에서 그들의 컴퓨터로 ODR에 참가하기 때문에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실시간으로 화상회의 장치의 사용을 고려할 때는 엄청난 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라는 전문 기술적인 면이 논점으로 되는 분쟁에 대응 가능한 심리기관을 구상할 수 있다든지, 국경을 넘은 분쟁처리의 가능성이 사이버 분쟁에 적합하다.²⁰⁾ 또한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있어서도 ADR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크게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상 구입상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온라인 거래에서는 그 위험은 심리적,

18) Henry H. Perritt, Jr에 따르면 ADR에는 중재와 조정뿐만 아니라 폭넓은 대체적 방법, 가령 credit card charge backs, escrow arrangements, complaint bulletin boards 등을 소개하고 있다(Henry H. Perritt, Jr, "Dispute resolution in Cyberspace: Demand for new forms of ADR," *Ohio State Dispute Resolution Article*, <http://www.disputes.net/cyberweek2000/ohiostate/perritt1.htm> 2003년 4월 28일 방문).

19) Blake Edward Vande Gard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ecomes Online Dispute Resolution," *The Cyberspace Law Journal*, December, 2000. <http://raven.cc.ukans.edu/~cybermom/CLJ/vande/vande.htm> 2003년 4월 30일 방문.

20) 町村泰貴, "インターネット社会とADR(上)", 『NBL』, No.689, 2000.5, p.7.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크다. 분쟁처리를 위해 이용하기 쉬운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은 소비자에게 안심 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전자거래의 이용촉진에도 기여한다. 이 외에도 절차의 신속성, 독립적 제3자의 전 문가 선택 그리고 합의지향성 등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ADR의 유용성이 네트워크 분쟁에도 적용된다.

3. 주요 온라인 중재의 실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기업의 거래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전자거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 상황에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와 함께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도 같은 방식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조직들이 속속 생겨 나고 있다.

현재 ODR 서비스를 제공하는 50여 개의 기관 중 20여 개가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¹⁾ 그러 나 사건의 분야나 해결에 관한 수치를 보이는 기관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²²⁾

1) 버추얼 매지스트레이트

최초의 ODR 시스템인 버추얼 매지스트레이트(The Virtual Magistrate, VMAG)는 미국 중재협회(AAA) 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로 시작하였다. 이는 시스템 운영자²³⁾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된 온라인 중 재 프로젝트였다. VMAG의 관리범위는 콘텐츠와 지적재산권 문제이고,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또는 상 표권침해, 영업비밀의 남용, 명예훼손, 사기, 허위의 거래실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만을 관할하였 다. 또한 시스템 운영자가 사용자의 접속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도 판단하였다.

VMAG는 중재부탁의 합의가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있다. 중재합의는 사전에 네트워크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VMAG의 절차는 자발적인데, 분쟁당사자는 중재신청 을 e-mail로 AAA사무국에 송부하고 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상대방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송부한다. 또한 모든 당사자를 메일링리스트(mailing list) 또는 뉴스그룹(news group)에 등록하여 의사소통의 장을

21) 제네바 대학(University of Geneva)의 E-Com Research Project에서 Gabrielle Kaufmann-Kohler 교수와 Jürgen Harms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2-3 Settle.com, Cyberarbitration, Cybercourt, eResolution, FordJourney, IntelliCOURT, iCourthouse, MARS, NovaForum.com, ODR.NL, Online Resolution, the Resolution Forum, SettleTheCase, SquareTrade, the Virtual Magistrate, WebAssured.com, Web Dispute Resolution, WEBDispute.com, WebMediate와 Word&Bond 등이다.(Thomas Schults, Gabrielle Kaufmann-Kohler, Dirk Langer, Vincent Bonnet, Online Dispute Resolution: The State of the Art and the Issues, *E-Com Research Project of the University of Geneva*, Geneva, 2001.12, p.11. <http://www.online-adr.org/> 2003년 4월 30일 방문)

22) Gabrielle Kaufmann-Kohler 교수와 Jürgen Harms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iCourthouse는 350건을 처리했는데, 가장 성공적 인 기관이다. NovaForum.com은 조정이나 중재로 세출된 200건이 전부이고, Online Resolution은 지원협상(assisted negotiation), 조정, 중재 진부가 30건이며, Web Dispute Resolution은 단지 몇건의 중재와 조정 처리하였다는 수치를 보 여주고 있다.(Thomas Schults, Gabrielle Kaufmann-Kohler, Dirk Langer, Vincent Bonnet, 위의 논문, 2001.12, p.27.)

23) America Online, Earthlink, CompuServe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인은 등록 후 72시간 내에 중재판정을 내리고,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웹상에 공개된다.²⁴⁾ 이와 같은 VMAG의 실험프로젝트는 실제로는 이용실적이 없다.²⁵⁾ 유일하게 중재판정이 내려진 *Tierney and Email America* 사건²⁶⁾이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Email America*에 의해 어메리카 온라인에게 보내진 메시지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e-mail 주소의 매매 제공 메시지는 AOL에 의해 삭제되었다. 왜냐하면 AOL 서비스 협정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행을 위반했기 때문이었다. 즉 유해하거나 공격적인 활동은 AOL 시스템의 제한, 인터넷 관행 그리고 고객불만을 고려할 수 있는데, VMAG는 문제의 메시지의 삭제나 차단은 AOL 서비스 협정하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²⁷⁾ 실제로 VMAG는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그 실패 원인은 온라인 중재가 시기상조였다는 점과 중재라는 구속력 있는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변호사가 권고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2) ICANN

모든 웹사이트는 그 자신의 도메인네임을 가지고 있다. 도메인네임 등록수가 증가하듯이 도메인네임 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특히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기타 영업표식과의 저촉에 기인한 분쟁은 .com이나 .org 등 국가구별 없이 최상위도메인네임에 관해서 인터넷에 의한 IP 주소나 도메인명 등을 관리하는 조직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ment Names and Numbers)에 의한 통일도메인네임 분쟁처리방침(The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라 칭함) 및 그 절차규칙의 적용하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라 칭함) 등의 분쟁해결기관이 처리하고 있다. 이는 특히 상표법위반과 관련되어 제소가 많이 이루어 졌고²⁸⁾ 일부의 판결에서는 상표법상의 침해로 보았다.²⁹⁾ 즉 *Virtual Works Inc., v. Network Solution Inc.* 사건에서는 사이버프라이머시 침해로 인해 상표가 희석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사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보편적 발달로 인하여 점차로 상표법상의 침해로 인해하기보다는 새로운 법률적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높아져 가고 있다.³⁰⁾

24) Ethan Katsh & Janet Rifkin, *Online Dispute Resolution*, Jossey-Bass, 2001, pp.106-107.

25) 사이버로-연구會·指宿 信 編, 앞의 책, p.282 ; VMAG은 약 25개의 분쟁사건을 처리했지만, VMAG의 판정에 당사자들이 모두 거부하였다. 1999년에 완전한 심리를 마친 VMAG의 분쟁처리 건은 하나도 없으나, VMAG은 지금도 <http://vmag.org>에서 운영되고 있다(Blake Edward Vande Garde, 앞의 논문, <http://www.ukans.edu/~cybermom/CLJ/vande/vande.html>).

26) VM Docket No.96-0001(08 May 1996).

27) The Virtual Magistrate Project, "Virtual Magistrate Issues Its First Decision Recommends that AOL Remove a Subscriber Message Offering Millions of Email Addresses For Sale," <http://vmag.org/docs/press/052196.htm> 2003년 6월 26일 방문.

28) *Rose Marie Doner and Forms, Inc., v. BRIAN AREL*, [Civil Action No.98-266-A : 60 F. Supp. 2d 558; 1999 U.S. Dist. LEXIS 13558]; *Umbro International, Inc. v. 3263851 Canada, Inc., & Network Solutions, Inc.* [Case No. (Law) 174388; 48 Va. Cir. 139; 1999 Va. Cir. LEXIS 1; 50 U.S.P.Q.2D (BNA) 1786]; *Lockeed Martin Corporation v. Network Solutions, INC., and Does 1-20* [Case No. CV 96-7438 DDP (ANx); 1997 U.S. Dist. LEXIS 10314; 43 U.S.P.Q.2D (BNA) 1056].

29) *Virtual Works Inc., v. Network Solution Inc.* [Civil Action No.99-1289-A; 106 F. Supp. 2d 854; 2000 U.S. Dist. LEXIS 2670; 54 U.S.P.Q.2D (BNA) 1126].

ICANN은 WIPO가 제출한 보고서³¹⁾를 참고하여 .com, .org, .net으로 된 유형의 도메인네임에 관한 해적행위(cyberpiracy)나 불법점거(cybersquatting)³²⁾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한다. ICANN에 의해 승인된 내 개의 기관³³⁾이 3년이 채 안된 기간동안 5,000건 이상을 처리함으로써 가장 성공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기관이라 할 수 있다.³⁴⁾

도메인네임의 불만은 e-mail이나 웹상의 특정양식을 이용한 보안장치³⁵⁾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클레임을 ICANN 규약(Policy)³⁶⁾과 절차규칙(Rules)³⁷⁾ 그리고 이레졸루션의 자체 세칙(supplemental rules)³⁸⁾에 따라 처리한다.

동 분쟁해결시스템은 1999년 12월에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UDRP의 성공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UDRP의 준비에 확실히 WIPO의 역사적, 정책적인 참여가 있었고, 절차의 투명성, URDP의 조항은 모든 등록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메인 네임의 문제가 공개에 민감하기 때문이다.³⁹⁾ 또한 이용의 편리함과 신용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분쟁해결의 신속성,⁴⁰⁾ 비용의 저렴성⁴¹⁾ 등도 이러한 온라인 중재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0) Smiley v. ICANN Ca. U.S.A, Superior Court[Case No. BC254659].

31) The Report of the WIPO Intert Domain Name Process: Archive, WIPO Publication No.439(E). <http://wipo2.wipo.int/process1>. 2003년 4월 30일 방문.

32) cybersquatting란 다른 사람의 상표명 등을 포함하는 도메인명을 후에 그 사람에게 고액으로 전매할 목적으로 또는 그 사람 이름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오인 혼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이트로 접속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 사람보다 먼저 도메인명을 등록,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木川吉尚, "國際民事紛爭處理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 「ジュリスト」, No.1175, 2000, p.68).

33) 즉, WIPO, eResolution, 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그리고 CPR the 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이다.

34) 현재(2003년 4월 29일 기준)의 통계는 각각의 처리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 WIPO가 4,961건(4,855건의 gTLD(generic top level domains)과 106건의 ccTLD(country code top level domains)이다. (<http://arbitrator.wipo.int/domains/statistics>. 2003년 4월 30일 방문)

- eResolution이 약 300건(<http://www.eresolution.ca/services/dnd/decisions.htm>. 2003년 2월 4일 방문)

- CPR이 25건을 보여주고 있다. (http://www.cpradr.org/ICANN_Cases.htm. 2003년 2월 4일 방문)

35) 안전장치란 암호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중 키 암호(public key cryptography)와 PKI 기술이 비밀성(confidentiality), 완전성(integrity), 인증(authentication) 그리고 비거절(non-repudiation)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s)과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

36) http://www.eresolution.ca/services/dnd/p_r/icannpolicy.htm

37) http://www.eresolution.ca/services/dnd/p_r/ICANNrules.htm

38) http://www.eresolution.ca/services/dnd/p_r/supprules.htm

39) Thomas Schults, Gabrielle Kaufmann-Kohler, Dirk Langer, Vincent Bonnet, 앞의 논문, 2001.12, p.29.

40)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1999년 12월 2일의 신청에 대해서(절차개시 일은 9일) 판정이 내려진 것이 2000년 1월 14일로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고 있다. 동 매년판정에 대해서는 <http://arbitrator.wipo.int/domains/decisions/index.html>을 참조.

41) 구체적인 절차비용은 여러 분쟁해결 프로바이더에 따라 다르지만, WIPO의 경우에는 한 명의 패널리스트인 경우, 모두 합해서 US\$1,000에 지나지 않는다.(WIPO의 절차비용에 관해서는 <http://arbitrator.wipo.int/domains/fees/index.html> 참조)

IV.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와 해결

1. 중재합의

1) 온라인 중재합의의 유효성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중재로 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중재합의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중재계약이라고도 한다. 현행 중재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중재합의⁴²⁾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한 별도 합의 또는 계약서에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현행 계약법은 계약자유 원칙을 좇아 실제 세계에서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법적 기초 위에서 있다.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행하여지는 온라인 중재합의에 있어서의 합의는 통상적인 거래의 합의와 비교할 때, 합의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망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⁴³⁾

그런데 e-mail과 같은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재합의가 국내법과 국제협약(뉴욕협약)에 규정된 현행의 법적 구조 내에서 유효한가하는 의문이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종래 중재합의 시 논의되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 및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이 취해짐과 동시에 낙성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데이터의 송수신에 의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한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전

42) 종전에는 중재계약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중재계약이란 용어를 함께 사용할 때 혼동될 우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arbitration agreement*의 표현은 번역상 중재합의라고 자주 지칭되고 있으며 계약이란 용어는 실질법상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절차법상 용어로는 합의라는 용어가 선호된다는 의미에서 개정법에서는 중재합의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여진다.

43) 중재에서 이용가능한 의사소통 도구의 종류들은 e-mail, telephone calls 또는 teleconferencing, web-based communication, videoconferencing, fax 그리고 in-person hearings 등이 있다. e-mail은 문서(documents)와 같은 보고서(briefs), 증거(evidence) 그리고 주장등을 제출하기 위해 e-mail이 이용되고, 실제로 IntellICOURT와 Virtual Magistrate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telephone도 꽤 이용되고 있는데, MARS, Web Dispute Resolution, WEBDispute.com, WebMediate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Web-based communication은 보고서(briefs)의 제출에 이용하거나(1-2-3 Settle.Com), 온라인 회의로서(MARS와 NovaForum.com) 이용되고 있다. Videoconferencing을 이용하는 온라인 중재기관은 MARS, NovaForum.com, Web Dispute Resolutions 등이고, Fax는 NovaForum.com, Word&Bond에서 이용하고 있다.

자계약에 의한 전자문서를 유효한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논의는 현재 전자적 매체를 통한 의사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법률행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⁴⁴⁾

이 점에 대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채택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에 따르면 계약의 성립에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과 승낙은 데이터 메시지의 방법에 의해서 표시될 수 있고, 계약의 성립에 데이터 메시지가 사용된 경우, 그러한 계약은 계약성립을 위하여 데이터 메시지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과 구속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⁴⁵⁾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계약성립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중재합의도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아식(Jasna Arsic)의 주장에 의하면,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e-mail 메시지의 교환은 뉴욕협약 제2조 2항의 요구조건(전보의 교환에 의해 성립된 중재합의를 허용하고 있음)⁴⁶⁾을 충족시킨다고 한다.⁴⁷⁾ 왜냐하면 e-mail의 교환은 전보의 교환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대체로 전통적인 법률행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웹이 청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청약은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포함하는 조건(terms and condition)이라 할 수 있는가? 전형적으로 인터넷 웹을 통한 청약은 전자적인 양식(forms)으로 이루어지는데, 매수인은 웹상의 서류양식에 명확히 기록한 다음, “제출”, “전송” 또는 “승낙” 버튼을 클릭하여 그 기능을 한다. 결국 매수인에 의해서 작성(또는 변경)되고, 작성된 버전(version)은 매도인에게 역으로 전송되는 것이다. 이 때 매도인의 청약이 중재조항이나 중재조항의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면, 뉴욕협약 제2조 2항에 따라 중재합의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또한 개정중재법은 현대 통신수단의 발전을 고려하여 전신, 원격통신 등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속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⁴⁸⁾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동의함”이라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체결된 중재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2) 중재합의의 형식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도 계약이나 합의가 디지털 정보의 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서의 매체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대부분 국가들의 국내법과 국제협약들은 중재조항은 문서(in writing)일

44)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9, p.393;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8, pp.344-345;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0, pp.319-320;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pp.81-297 외 다수.

45)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rtical 11; 内田 貴, “電子商取引に關するUNCITRAL モデル法(試譯)”, 「NBL」, No.603, 1996, p.37.

46) Article II.2. The term “agreement in writing” shall include an arbitral clause in a contrac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signed by the parties or contained in an exchange of letters or telegrams.

47) Jasna Arsic,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n the Internet,”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14, No.3, September 1997, p.219.

48) 중재법 제8조.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중재합의는 인터넷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합의 형식이 종래의 문서요건을 충족시키는가가 문제이다.

우리 나라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에는 전자문서를 모두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통일상법전의 의하면 문서는 ‘유체물에 의도적으로 변형된 것 전부’(any other intentional reduction to tangible form)⁴⁹⁾라고 하고 있으며,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에서는 문서라는 개념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기록(record)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기록이란 ‘유형적 매체에 등록된 정보, 또는 전자적 기타 매체에 축적되고,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복구 가능한 정보’(information that is inscribed on a tangible medium or that is stored in an electronic or other medium and is retrievable in perceivable form)를 의미한다고 규정⁵⁰⁾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를 정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컴퓨터용어의 정의상 여러 가능성 중의 취사선택을 전제로 하는 어감이 짙어 어떠한 대상을 나타내는 정의를 위한 법률적 용어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전자적 형태의 기록이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⁵¹⁾

우리 나라의 현행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는 문서에 의한 별도 합의 또는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중재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 등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중재법이나 뉴욕협약에서도 문서에 의한 합의라고 하는 말은 종이 또는 전보의 교환을 포함하거나,중재합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문서요건의 입법취지(아마 사기를 방지하는 취지)에 적합하기 위한 충분한 서면성이 있으면, e-mail의 교환은 뉴욕협약에서도 유효한 중재조항 설정의 문서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⁵²⁾ 네덜란드 민사소송법은 문서를 요구하고 있고, 이탈리아 민사소송법⁵³⁾에서도 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단지 전보와 텔렉스가 언급되었다.⁵⁴⁾ 그리고 독일 법은 소비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중재합의는 양당사자에 의해 서명된 공증증서(a notarial deed, Urkunde)를 포함한다고 규정⁵⁵⁾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스위스의 경우 국제중재합의는 텍스트(text)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어떤 형식으로도 될 수 있다고 규정⁵⁶⁾하여 전자적으로 전송된 중재합의도 유효하다.

49) Uniform Commercial Code §1-201 (46).

50)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Section 102 (54).

51) 김진환, “전자거래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 제516호, 1999.9.

52) Christopher Kuner, Legal Obstacles to ADR in European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Commerce & Law Report*, Vol.5 No.28, 2000.7, p.775; Michael E. Schneider & Christopher Kuner,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http://www.disputes.net/cyberweek2001/interElecCommerce.htm>. 참조. 2003년 4월 5일 방문.

53) Italian Civil Procedure Law, Art. 807.

54) Dutch Civil Procedure Law, Art. 1021.

55) German Civil Procedure Law, Art. 1031(5).

56) The 1987 Swiss Federal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PIL Act), Art. 178 part 1.

이러한 입법이나 협약은 각각의 성립시기에 응해서 텔렉스, 전보, 팩스 등을 서면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지만,⁵⁷⁾ 그런데도 조문을 정의대로 해석하면 이미 국제상거래의 실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UNCITRAL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실무의 필요에 맞추는 동시에 전자거래의 보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서면요건의 완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중점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서면 외에 중재합의를 증명하기 위한 유효하면서 확실한 수단을 어떠한 규정 형태로 취하는가 이다. 현재 합의의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든지 사후의 참조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란 일반규정을 설정하고 게다가 약간의 예시규정을 설정할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⁵⁸⁾ 따라서 우리 나라의 개정 중재법에도 UNCITRAL 모델법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실무의 다양성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면서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다.

2. 중재절차

온라인에 의한 중재는 주로 당사자가 장래의 분쟁에 관하여 사전에 분쟁해결조항을 정한 중재조항에 합의하고 서명한 경우와 분쟁이 발생한 후에 조정에 실패한 당사자들이 타협하여 보다 법적인 수단인 중재에 분쟁을 위임하는 것에 합의(사후적)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사중재의 중재법과 절차는 중요한 분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분쟁은 소액이나 사소한 이해관계에 관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의 중재규칙을 그대로 사이버중재에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온라인 중재는 중재신청에서 종료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가령, 신청서나 제출된 문서를 e-mail이나 전자식 파일로 전송하였을 때 문서성의 인정여부나 증거법상의 문제, 중재장소 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식되기에 이하에서 이들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57) 예를 들면, 1996년에 개정된 영국중재법(Arbitration Act, 1996) 제5조 6항에서는 서면이란 어떤 수단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references in this part to anything being written or in writing includes its being recorded by any means)고 하는 규정을 두고(제5조 6항), 음성메일, e-mail, 비디오에 의한 기록 등으로의 대응을 피하고 있다. 또한 1998년에 개정된 독일법은 용선계약에 기록된 중재조항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서면요건을 만족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031조 4항).(三木浩一, “仲裁制度の國際的動向と仲裁法改正の課題”, 『ジュリスト』, No.1207, 2001.9. p.55 각주 47 참고)

58) 현재 UNCITRAL에서 검토되고 있는 서면요건의 완화의 유력한 안 하나는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Writing includes any form that provides a record of the agreement or is otherwise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including electronic, optical or other data message”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해석상의 의문을 불식시킬수는 없고, 부가적인 규정을 어떻게 할까가 논의되고 있다.

1) 전자문서의 문서성

현행법상(중재법 포함) 일정한 경우 문서의 존재를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거나, 대항요건 등으로 문서의 작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온라인 중재절차상 각 단계에서 필요한 문서들은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전자문서의 효력은 여러 국가들의 입법 예에서 보더라도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고,⁵⁹⁾ 전자거래의 현황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전자문서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서란 서류상의 잉크로 쓰여진 문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 요건의 본질은 당사자의 교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데이터의 송신결과는 문서라는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⁶⁰⁾ 그러나 어떤 종류의 전자적 데이터 송신의 경우는 일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문서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데이터 송신에는 프린트되지 않은 e-mail, 컴퓨터 로그(log) 파일에 기록되지 않은 e-mail, 채팅라인(chat line)에서의 교환, 프린트되지 않은 전자게시판, 시스템관리자가 기록하지 않은 전자게시판, 각각의 로그에 기록되지 않은 전자문서교환으로 이루어진 것 등이다. 이들 데이터의 송신이 문서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이들 데이터를 디스크에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경향은 e-mail은 법적 증거의 원칙을 충족시킨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⁶¹⁾ 이미 언급했듯이, 뉴욕협약 제2조 2항에서 전보의 교환에 의해서 중재합의가 성립됨을 인정하고 있고,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제7조 2항에서도 텔렉스, 전보 또는 합의의 기록을 규정한 기타 원격통신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어 e-mail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비록 많은 법원은 아직 e-mail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e-mail 메시지가 증거로 허용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⁶²⁾ 그리고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문서를 규정하고 있다면, 중재 당사자들은 명시적 합의를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

59)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 제6조 1항; 플로리다주의 전자서명법 제3조 4항; 싱가포르의 전자거래법 제6조; 한국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와 전자서명법 제3조 1항, 2항에서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리노이즈주의 전자상거래안전법 제115조에서는 입법자가 전자문서의 적용을 부적합한 것으로 의도하였거나 범문상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모순될 경우, 유언·신탁 등의 경우와 단일한 존재로서 생성·저장·송수신되고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본이 수정되지 아니한 전자문서가 오직 한 사람에 의하여 보관되고 사본의 형태로만 복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권리와 의무를 표상하는 유일하고도 이전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60) Ben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EDI, E-Mail, and Internet: Technology, Proof, and Liability*, Aspen Law & Business, 1996, pp.16-19.

61) Benjamin Write,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EDI, Fax, and E-Mail: Technology, Proof and Liability*, Little Brown, 1991.

62) Richard Hill, "On-line Arbitration: Issues and Solu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April 1999. <http://www.umass.edu/dispute/hill.htm> 2003년 3월 5일 방문.

2) 중재장소

사이버상에서 중재제약을 체결할 시에는 중재장소의 선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재의 경우 중재 장소와 준거법의 선택문제는 당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터넷과 웹은 모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다. 국제거래 중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그리고 인터넷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미국 내에서 일어난다면 어느 주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 가도 똑 같은 문제이다.⁶³⁾ 이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중재절차를 진행할 경우, 분쟁 당사자, 중재인, 감정인·증인 등의 제3자의 심리참가가 각각 다른 물리적 장소에 있게 된다. 그래서 중재와 같은 ADR에서는 중재절차가 온라인으로 행해지고 준거법이 물리적 장소에 의존한다면 중재장소의 결정에 관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기존 중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의한 중재 역시 분쟁당사자들은 법 적용을 당사자합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재장소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고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를 정한다⁶⁴⁾고 하고 중재판정부는 중재장소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편의 및 당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섭외사법에서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⁶⁵⁾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준거법의 선택이 주로 사업자가 약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국가의 법률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 경우 약관의 효력이 문제된다.⁶⁶⁾

중재장소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사자에 의한 법 선택이 없는 경우 중재인에 의해 적용할 법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거래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초창기이고, 전자거래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이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법 적용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발생은 중재절차에 대한 준거법, 재판관할 그리고 판정의 집행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낳는 유동적인 중재(floating arbitration)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의 장소(seat)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법 체계에서는 중재장소 결정에 대한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재장소는 특정한 법적 시스템으로 중재를 연결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중재절차가 물리적으로 일어나

63) Blake Edward Vande Garde, 앞의 논문, <http://www.ukans.edu/~cybermom/CLJ/vande/vande.html>

64) 중재법 제21조 2항.

65) 섭외사법 제9조.

66) 전자거래업자가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약관의 명시, 교부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 3조에 따라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약관의 명시 의무 및 설명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용약관체계에 있어서 “주요 약관 조항”을 pop-up화면으로 띄워주고 약관을 숙독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I agree”에 클릭하게 한 후 다시 한번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체결 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pop-up화면을 띄워 동의불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약관의 교부의무가 충족되는가 하는 점에서는 원하는 이용자가 약관을 다운로드받아서 인쇄하여 자세히 약관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부의무가 전자거래에서도 충족될 수 있다.

고 있는 독자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1996년 영국중재법에도 채택되었다.⁶⁷⁾

따라서 온라인 중재절차에서는 분쟁 당사자, 중재인 그리고 제3의 심리참가가 각각 다른 물리적 장소에서 있기 때문에 중재장소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제적인 통일규정 논의가 필요하고, 개별국가들은 온라인 거래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jurisdiction)의 의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온라인 분쟁에 대한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3. 비밀성과 보안

개방형 컴퓨터 네트워크로 온라인 ADR 절차가 운영되는 경우 비밀성(confidentiality)과 절차의 보안(security)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매체로 인터넷상으로 전송된 모든 메시지나 문서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고액분쟁의 경우에 절차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와 같은 적절한 기술적 메커니즘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⁶⁸⁾

이것에 관하여 세계 여러 사법권이 최근 디지털서명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⁶⁹⁾ 디지털 서명은 전자서명이 서명자로 표시된 사람의 서명이라는 사실, 전자서명 된 전자문서는 서명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사실, 전자서명 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후에도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디지털 서명의 사용은 온라인 절차에서 충분한 보안수준을 확보하는 중요한 것이다.

전통적인 중재에 있어서 양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절차와 판정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합

67) Sections 3. In this Part “the seat of the arbitration” means the juridical seat of the arbitration designated -

(a) by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b) by any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s in that regard, or

(c) by the arbitral tribunal if so authorised by the parties, or determined, in the absence of any such designation, having regard to the parties’ agreement and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Section 53.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where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s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any award in the proceedings shall be treated as made there, regardless of where it was signed, despatched or delivered to any of the parties.

68)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Art. 17(1), providing that data controllers “must implement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data against accidental or unlawful destruction or accidental loss, alteration, unauthorized disclosure or access, in particular where the processing involves the transmission of data over a network, and against all other unlawful forms of processing. Having regard to the state of the art and the cost of their implementation, such measures shall ensure a level of security appropriate to the risks represented by the processing and the nature of the data to be protected.”

69) 미국 유타주의 디지털 서명법(Utah Digital Signature Act, 1995), 미국 플로리다주의 전자서명법(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디지털 서명법(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 1997), 독일 디지털 서명법과 규정(German Digital Signature Act and Ordinance, 1997), UNCITRAL의 전자서명통일규칙 초안(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 1997), 미국 일리노이즈주의 전자상거래안전법(Illinois Electronic Commerce Security Act, 1998),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디지털서명가이드라인(Digital Signature Guidelines, 1995, 1996)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타주의 디지털 서명법을 모델로 전자서명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의한다. 오프라인 ADR은 물리적 장소에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은 비밀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온라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온라인 문서들은 보다 자주 복사가 이루어지고 삭제는 거의 입증하기가 어렵다.⁷⁰⁾ 이는 인터넷의 본연의 특징이다. 실제로 가장 단순한 e-mail 메시지의 경우에도 발신자의 하드드라이버(hard drive),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백업 시스템 그리고 일시적 저장파일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하드드라이버 상에도 복사상태로 저장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커가 e-mail 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고, 그 메시지를 서버상에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비밀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암호화이다. 암호화(encryption)는 비밀성과 데이터 보안을 보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호는 알고리즘(algorithm)이나 키의 수단에 의해서 권한 없는 제3자의 접속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중재인과 당사자들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 비밀성 보증에 대한 일반적 방법은 소위 비대칭 암호시스템(asymmetric crypto system)으로서, 이 시스템은 데이터의 암호와 해독을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키(a public and a private key)를 이용한다.⁷¹⁾ 이는 정당한 키 없이는 아무도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메시지를 읽기 위해 필요한 그 키는 메시지에서부터 분리되어 수신인에게 보내지고, 그 메시지 자체보다는 다른 경로에 의해서 수신인에게 도달된다.

따라서 비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인은 반드시 자동적인 백업들을 필요이상으로 보존하지 않아야 하며, 권한 없는 제3자가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암호는 비밀성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서 암호에 의해서 비밀성이 보증되었을 때, 인터넷이 복사로부터 이룩되었다는 사실의 이점을 누리게 되며, 양 당사자와 중재인은 언제라도 어떤 항목을 체크하기 위해 완전한 서면 파일에 접속할 수 있다.

4. 중재판정의 집행

일반적으로 국제중재는 전통적인 소송의 결과보다도 이행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중재판정이 외국법원의 판결보다도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의 효력으로서 재판권이 유래하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 집행의 용이함은 국경이 거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든 잠정적이든 중재인에 의해서 자필로 문서상에 기록되고 서명되는데, ODR에 의한 중재판정의 경우 문서의 작성과 판정을 전자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

70) E. Katsh, "The Online Ombuds Office: Adapting Dispute Resolution to Cyberspace," *A Working Paper for the NCAIR Conference on ODR*, Washington, DC, 1996, <http://mantle.sbs.unass.edu/vmag/disres.html>. 2003년 4월 30일 방문.

71) B. J. Koops, *The Crypto Controversy, A Key Conflict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Hague, London, Boston, 1st edition, 1999, p.35.

한 중재판정이 당사자에 의해 이행이 안되고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할 경우 법원에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소비자 계약에서 중재합의에 관하여 국내법에서 제한을 하는 경우처럼 중재조항의 유효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⁷²⁾

보통법에 있어서 전자적 판정의 인정과 집행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이 있다.⁷³⁾ 첫째, *Lord in Bank Mellat v. Techniki S.A* 사건⁷⁴⁾에서 법원은 특정한 법적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중재의 결과로 인한 유동적인 판정을 거부한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전자적 판정은 유동적인 판정의 개념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보통법에서 인정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 둘째, *Naviera Amazonica peruana SA v. Compania internacional de Seguros del peru* 사건,⁷⁵⁾ *Union of India v. McDonnell Douglas Corpn* 사건,⁷⁶⁾ 그리고 *ABB Lummus Global Ltd v. Keppel Fek Ltd* 사건⁷⁷⁾에서 법원은 중재장소는 중재합의로부터 모르고, 절차법으로서 A국의 준거법은 중재장소로서 A국을 선택하기 위한 강한 지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중재장소는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중재장소는 중재법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된다. 따라서 전자적 판정은 보통법에서 집행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두 번째 관점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ADR 절차에서 당사자들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을 통하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합의(binding settlement agreement)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상인)들이 ADR 절차의 결과에 구속된다고 합의하여 쌍방 또는 일방이 이를 이행하는 형태이다.⁷⁸⁾ 그러나 판정의 외국집행은 특히 소비자거래인 경우 많은 비용과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ADR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에 대한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재판정자(decision-maker)가 법원 판결의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수단은 뉴욕협약으로서 이는 단지 외국중재판정(foreign arbitral awards)에 적용되고, 조정과 같은 비구속형태의 ADR에서 내려진 판정이나 국내 중재판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자거래에서 소비자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에 법적인 장해로 된다.

또한 뉴욕협약 제4조에서는 판정의 집행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입증된 복사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중재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된다⁷⁹⁾고 하는 형태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판정의 하드카피를 배포하도록 중재

7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rticle V 1. (a).

73) Lafi Daradkeh, "The extent to which foreign online arbitration awards(Electronic Awards) are recognisable and enforceable under English law," University of Leeds, 2003. <http://www.odrnews.com/lafi.doc> 2003년 6월 26일 방문.

74) [1984] QB 291.

75) [1988]1 Lloyd's Rep.116.

76) [1993]2 Lloyd's Rep.48.

77) [1999]2 Lloyd's Rep.24.

78) 이러한 합의는 모든 EU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진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과 같이 국내법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 결과는 브뤼셀 협약(Brussels Convention) 제26조 규정에 다른 EU 회원국도 집행될 수 있다.

79)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rticle V 1. (e) enforcement

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중재판정의 하드카피판의 배포를 요구하는 국내법의 수용이 요구된다.

V. 결 론

인터넷의 발전은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의 상호결합을 깊게 하거나 또는 어떤 독특한 사회공간을 형성하여 사이버스페이스 또는 가상세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대는 해외에 거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거래기회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거래의 국제화의 이점을 누리는 만큼 분쟁의 국제화라는 위험도 동시에 부담해야 하며, 고액이 외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분쟁발생시의 상대방도 외국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종래의 분쟁과는 다른 형태의 당사자간 분쟁으로 새로운 형태의 분쟁발생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즉 종래의 분쟁발생은 단지 정보를 교환하는 당사자간에 발생하였지만, 인터넷상의 분쟁은 상이한 국가간에 존재하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대와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적어도 당사자의 어느 쪽은 물리적인 접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절차에 연루되어 버리는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

이때에 종래의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분쟁처리를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다지 문제는 없을 지도 모른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에 관한 제도적,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OECD를 중심으로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의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ADR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ODR에 의한 분쟁해결시스템은 많은 유용성을 지니는 반면에 법적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ODR의 개시에서 종료까지 다양한 법적 제문제(중재합의, 중재절차, 중재집행 등)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간 전자거래(B to B)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표준전자문서교환약정(Standar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greement)에 따라 이러한 제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거래(B to C)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은 아직까지 법적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국제적인 규칙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인식과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9.
-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8.
- 김종희, 「조정제도」, 대한상사중재원, 2001.
- 김진환, “전자거래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 제516호, 1999.9.
- 노태악, “전자거래·전자서명의 계약법적 검토”, 경제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2000.
- 반홍식,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0.
- 송상현,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XIV, 박영사, 1993.
-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 옥무석, “전자거래기본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인터넷법률」, 제8호, 2001.
- サイバーロー研究会・指宿 信 編, 「サイバースペース法」, 日本評論社, 2000.
- 内田 貴, “電子商取引に關するUNCITRAL モデル法(試譯)”, 「NBL」, No.603, 1996.
- 三木浩一, “仲裁の機能と國際的動向”, 「法學セミナー」, 日本評論社, No.560, 2001.
- 三木浩一, “仲裁制度の國際的動向と仲裁法改正の課題”, 「ジュリスト」, No.1207, 2001.
- 鈴木仁志, “アメリカ合衆國のADRと訴訟社會(上)”, 「NBL」, No.715, 2001.
- 町村泰貴, “インターネット社會とADR(上)”, 「NBL」, No.689, 2000.
- 早川吉尚, “サイバースペースの擴大と國際民事訴訟リスクの増大”, 「法學セミナー」, 日本評論社, No.511, 1997.
- 早川吉尚, “國際民事紛争處理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 「ジュリスト」, No.1175, 2000.
- 河村寛治, “紛争解決における新たな ADR の動き~ICC-ADR 新ルールを中心として~”, 「國際商事法務」, Vol.29, No.10, 2001.
- Arsic, Jasn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n the Internet,”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14, No.3, September 1997.
- Coulson, Robert,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 Daradkeh, Lafi, “The extent to which foreign online arbitration awards(Electronic Awards) are recognisable and enforceable under English law,” University of Leeds, 2003.
- Goldberg, Stephen B., Sander Frank E. A., Rogers Nancy H.,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 2nd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2.
- Heuvel, Esther Van Den, “Online Dispute Resolution as a Solution to Cross-Border E-Dispute ; An Introduction to ORD,” 2000.
- Hill, Richard, “On-line Arbitration: Issues and Solu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April 1999.
<http://www.umass.edu/dispute/hill.htm>
- Hultmark, Christina, “Arbitration Online,” Viktoria Institute University of Göteborg,

- <http://www.viktoria.se/~klang/text/klangarb.pdf>
- Katsh, E & Rifkin J, *Online Dispute Resolution*, Jossey-Bass, 2001.
- Katsh, E., Rifkin J. & Gaitenby A., "E-Commerce, E-Disputes, and E-Dispute Resolution: In the shadow of eBay Law,"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5:3, 2000.
- Katsh, E., "The Online Ombuds Office: Adapting Dispute Resolution to Cyberspace," A Working Paper for the NCAIR Conference on ODR, Washington, DC, 1996, <http://mantle.sbs.umass.edu/vmag/disres.html>
- Koops, B. J, *The Crypto Controversy, A Key Conflict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Hague, London, Boston, 1st edition, 1999.
- Kuner, Christopher, "Legal Obstacles to ADR in European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Commerce & Law Report*, Vol.5, No.29, 2000.
- _____, "Legal Obstacles to ADR in European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Commerce & Law Report*, Vol.5 No.28, 2000.
- Leniton, Sharon C., Green James L., *Elements of Mediation*,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1997.
- Lieberman, Jethro K. & Henry, James F.,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University of Cleveland Law Review*, Spring, 1986.
- McLaughlin, Joseph 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American Law Institute*, 1993.
- Perritt, Jr Henry H., "Dispute resolution in Cyberspace: Demand for new forms of ADR," *Ohio State Dispute Resolution Article*, <http://www.disputes.net/cyberweek2000/ohiostate/perritt1.htm>
- Schneider, Michael E. & Kuner Christopher,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http://www.disputes.net/cyberweek2001/interElecCommerce.htm>.
- Schults, Thomas, Kaufmann-Kohler Gabrielle, Langer Dirk, Bonnet Vincent, "Online Dispute Resolution: The State of the Art and the Issues," *E-Com Research Project of the University of Geneva*, Geneva, 2001. <http://www.online-adr.org>
- Schultz, Thomas, "Online Dispute Resolution: An overview and selected issues," University of Genev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Forum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Geneva, 2002.
- Schweber, Claudine, "Our Telephone may be a Party Line: Mediation by Telephone," *Mediation Quarterly* 191, 1989.
- The Report of the WIPO Intert Domain Name Process: Archive, WIPO Publication No.439(E). <http://wipo2.wipo.int/process1>.
- Vande, Garde Blake Edwar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ecomes Online Dispute Resolution," *The Cyberspace Law Journal*, December, 2000. <http://raven.cc.ukans.edu/~cybermom/CLJ/vande/vande.htm>
- Wilikens, Marc, Vahrenwald Arnold &, Philip Morris Joint Research Center, "Out-of-court dispute settlement systems for e-commerce," 20th April 2000.
- Wright, Benjamin,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EDI, E-Mail, and Internet: Technology, Proof, and Liability*, Aspen Law & Business, 1996.
- Wright, Benjamin,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EDI, Fax, and E-Mail: Technology, Proof and Liability*, Little Brown, 1991.
- Yeend, Nancy Neal, "Electronic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Design," *Mediation Quarterly* 193, 1993.